
	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	문서번호	SY(원주)-SHE-G-33
		제정일자	2020. 01. 15
	폐기물관리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1 of 7

[개정 이력]

Rev	제/개정일자	내 용	비 고
0	2020. 01. 15	ISO 14001 인증추진에 따른 신규제정	
1	2022. 01. 17	임직원 변경에 따른 개정	


[승인 및 검토]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환경관리자	환경담당	안전환경팀장
성 명	이 규 성	권 용 재	안 창 근
서 명			
일 자	2022. 01. 17		

	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	문서번호	SY(원주)-SHE-G-33
		제정일자	2020. 01. 15
	폐기물관리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2 of 7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책임과 권한
4. 운영절차
5. 관련기록

	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	문서번호	SY(원주)-SHE-G-33
		제정일자	2020. 01. 15
	폐기물관리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3 of 7

1. 목 적

이 지침은 회사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발생을 억제 시켜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법규의 준수, 환경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삼양식품(주)원주공장(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준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폐기물

쓰레기, 오니(슬러지), 폐유, 폐산, 불량 부품 등으로서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2 사업장(일반)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3.3 사업장(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3.4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차원에서 원래의 기능과 같이 또는 물리, 화학적 변화를 거쳐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뜻한다.

4. 책임과 권한

폐기물 배출시설 및 분리수거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보관, 처리는 폐기물관리부서 물류팀에서 총괄한다.

4.1 안전환경팀장


4.1.1 폐기물관리대장 및 기타폐기물관련 기록관리

4.1.2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에 관한 사항

4.1.3 폐기물의분류,식별,보관,취급,운반에 대한 감독 및 검토

4.1.4 폐기물관련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확인

4.1.5 폐기물의 식별, 분리, 처리 및 폐기물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유지관리

	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	문서번호	SY(원주)-SHE-G-33
		제정일자	2020. 01. 15
폐기물관리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4 of 7

- 4.1.6 지속적인 폐기물감소 및 처리방법 개선 검토
- 4.1.7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검토 및 홍보
- 4.1.8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운용 및 처리 증명서 발급
- 4.1.9 폐기물 선정업체의 적법성 점검
- 4.1.10 폐기물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2 물류팀장

- 4.2.1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 4.2.2 지게차등 운반장비의 보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감독

4.3 해당팀장

- 4.3.1 발생된 폐기물의 수거,분류,운반 및 폐기 관리 감독
- 4.3.2 폐기물재활용 및 재사용 적극추진
- 4.3.3 부적합사항에 대한시정 및 예방조치

5. 운영절차

5.1 수집

- 5.1.1 배출부서는 발생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혼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종류별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분리 배출한다. 발생된 폐기물을 작업장내에 임시 보관.저장할 경우 식별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5.1.2 배출부서는 폐기물 배출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침출 되지 않을 정도) 폐기물 보관장의 지정된 구역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5.2 보관 및 관리

5.2.1 폐기물 보관장

- 1)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해 부식,손괴되지 않는 재질을 이용하여야 한다.
- 3) 폐기물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바닥이 방수가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4) 보관장소에는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 5)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 6) 폐기물보관소에는 폐기물관리법규에 따른 지정 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부착 하여야한다.

5.2.2 폐기물 처리 시스템(올바로 시스템)관리

- 1) 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 증명
- 2) 폐기물 처분 분담금 자료 산출 및 관리
- 3) 폐기물 자원순환 성과자료 산출 및 관리

	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	문서번호	SY(원주)-SHE-G-33
		제정일자	2020. 01. 15
	폐기물관리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5 of 7

5.2.3 수집운반차량 관리

- 1) 수집운반차량을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
- 2) 위탁 처리 시 위탁 수집운반업체 등록 및 관리
- 3) 적재 중량(과적 금지) 등 관리

5.3 위탁처리

5.3.1 폐기물 위탁처리는 5.4항 위탁처리업체선정 및 관리절차에 따른다.

5.3.2 위탁처리시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3.2 폐기물 위탁시 환경공단에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후 배출한다

5.4 위탁처리업체 선정 및 관리

5.4.1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부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법적 등록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위탁처리를 계약하여야 한다.

5.4.2 안전환경팀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 요청하며 폐기물 처리 현황을 기록 보관(5년)하여야 한다.

5.4.3 안전환경팀장은 폐기물 위탁처리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올바로” 시스템에서 인계서를 발행하여야한다.

5.4.4 안전환경팀장은 지정 폐기물 처리시 주변의 오염이 되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5.4.5 안전환경팀은 처리된 폐기물을 년 월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에 집계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5.5 교육

안전환경팀장은 내.외부 폐기물 취급자에 대하여 운반 폐기물의 특성, 취급 및 운반에 따르는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6 점검 및 측정


5.6.1 안전환경팀은 매각 및 위탁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년1회 이상 폐기물위탁처리 업체를 임의 선정하여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점검표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한다.

5.6.2 안전환경팀은 신규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전에 관계기관을 통하여 성분분석을 실시 하여야 한다.

6. 관련기록

6.1 사업장 폐기물관리 기록관리(“올바로” 시스템)

6.2 위탁업체 점검표

	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	문서번호	SY(원주)-SHE-G-33
		제정일자	2020. 01. 15
	폐기물관리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6 of 7

<붙임 1> 사업장 폐기물관리 기록관리

(앞쪽)


사 업 장 폐 기 물 관 리 대 장

(①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② 발생내용				③ 자가 처리내용							④ 위탁 처리내용					결 재									
연월일	성질·상태	발생량	발생량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최종처분		처리량누계	연월일	위탁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위탁처리량누계	⑤ 보관량							
						처리방법	처리량	잔재물 발생내용	처리방법	처리량											연월일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위탁처리량누계

364mm × 257 mm (백상지 80g/㎡)

	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	문서번호	SY(원주)-SHE-G-33
		제정일자	2020. 01. 15
	폐기물관리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7 of 7

<붙임 2> 위탁업체 점검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점검표

처리업체명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처리업종류					
점검 일시					
처리업체확인		(인)	일 자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비 고
			적 합	부적합	
필수	허가, 등록	1. 폐기물 처리업 등록 여부(중간처리.최종처리)			
		2. 폐기물 운반업 및 차량등록 여부			
		3. 배출시설 허가여부 (수질 . 대기)			
선택	시설관리	1. 매립장관리 적법 여부			
		2. 침출수 처리 적법 여부			
		3. 소각로 정상가동 여부			
	수집운반차량	4. 차량 적체함의 표기사항 표기여부			
		5. 등록증 부착여부			
		6. 비산방지장치 비치 여부			
	관리절차 사고대비	7. 폐기물 운반, 처리신고전표 보고 및 관리여부			
		8. 종업원에 대한 안전환경교육 실시여부			
		9. 운반사고시 응급조치 및 방제절차 구비여부			
		10. 비상사태 체계도 운영 여부			
등록기준	점검결과 필수항목 1개 이상 또는 선택항목 4개 이상이 부적합일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자격 상실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 사항					
시정조치 내용 확 인				일자	
				확 인 자	